

『2021년도 기업협력군 에너지동행 사업』 공고

대·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도모하고 중소기업의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온실가스 동반감축 지원을 위한 “2021년도 기업협력군 에너지동행 사업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
2021년 2월 16일
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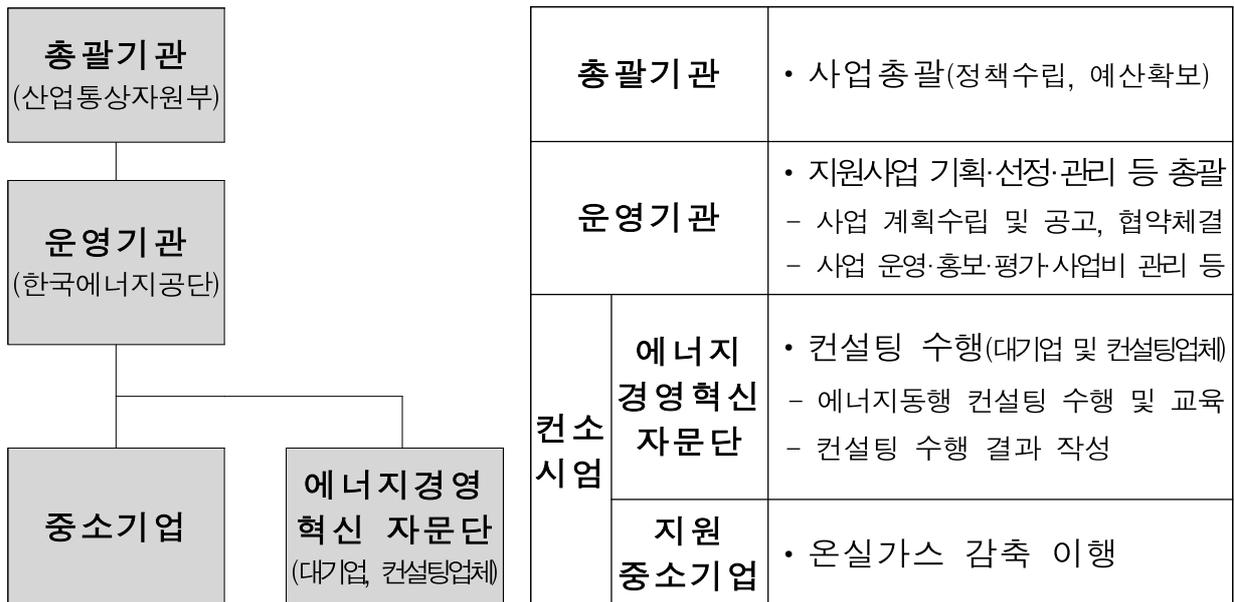
- 다 음 -

1 사업목적

- 대기업 전·현직 전문가 중심의 「에너지경영혁신 자문단」이 중소기업의 에너지 현황 진단, 감축기술 이전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에너지 효율향상 지원 및 대·중소기업 온실가스 동반감축 유도

2 추진체계

<에너지동행사업 추진체계>



3 지원대상

- 컨소시엄 (대기업·중소기업·컨설팅업체로 구성)

< 컨소시엄 기준 >

구 분	참여기준
컨소시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기업 + 중소기업(n개사) + 컨설팅업체 - (대기업) 우수 에너지절약기술을 보유한 에너지다소비사업장 - (중소기업) 에너지사용량 2,000toe 미만인 중소기업 - (컨설팅업체) 에너지 진단 가능 기관 * (대기업) 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항에 따른 기업 ** (중소기업)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기업 *** (컨설팅업체) 「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」 군에 속하지 않는 기업

◆ 제한 사항

-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(e나라도움)을 통해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 3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, 사업자 선정 배제
- 2019년 ~ 2020년 본 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은 사업자 선정 배제

4 지원내용

1. 사업기간 : 협약체결일 ~ 2021년 11월 19일까지

2. 지원규모 및 조건

- (지원예산) 총 지원예산 1.97억원
- (지원조건) 총 사업비의 75%(340만원/업체) 지원
 - 대기업에서 총 사업비의 25%(114만원/업체)를 자부담하여 현물로 출자
 - * 현물 : 사업과 관련된 자료검토, 현장기술지도, 교육 등에 소요되는 대기업의 인건비 및 출장비 등이 해당됨
- (지원대상 수) 중소기업 58개사

3. 사업내용

- 에너지절감 및 에너지향상 유도를 위한 컨설팅
 - 대기기업의 에너지절약 노하우 전수 및 에너지절약 기술지도 실시
 - (가능 시) 대기기업의 시설투자 지원 등을 통한 중소기업 현장 개선 사항을 실제 투자이행으로 연결

< 컨소시엄 역할 >

구 분		사업 내 역할
컨소시엄	대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에너지동행 사업 추진 총괄 ○ 에너지절감 노하우 전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현장진단·컨설팅 참여 - 에너지절감 기술교육 - 대기업 우수 에너지절감 사업장 견학 ○ 종합보고서 작성 및 기술지도보고서 검토
	중소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관련 컨설팅 자료 제공 ○ 사후관리 대응(사업 참여연도 후 3년간)
	컨설팅업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현장진단 및 개선사항 도출 ○ 에너지절감 기술교육 지원 ○ 기술지도보고서 작성 ○ 사후관리 대응 지원 등

5 추진일정

절 차	추진 내용	일 정
① 모집 공고	○ 컨소시엄 모집 공고	2~3월
② 선정 및 협약	○ 컨소시엄 선정 및 협약체결	4월
③ 선금 교부	○ 정부보조금 선금 교부	5월
④ 중간점검	○ 컨설팅, 기술교육 진행상황 등 중간 점검	8월
⑤ 컨설팅수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에너지동행 컨설팅 및 효율화 교육 ○ 중소기업 에너지 진단 및 현황 분석 ○ 우수 사례 사업장 현장 실사 ○ 에너지절감목표 수립 및 실행계획 수립 	~10월
⑥ 최종보고서 제출	○ 최종보고서 제출 및 사업완료	11/19
⑦ 최종평가	○ 사업 결과 최종평가	11월말
⑧ 잔금 교부	○ 정부보조금 잔금 교부	11월말
⑨ 성과보고회	○ '21년 사업 성과보고회 개최 및 지원금 정산	~12월

*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6 세부 추진 내용

1. 지원사업 신청

- 보조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컨소시엄은 대기업을 대표기업으로 하여 [별지 제1호 서식]에 따른 사업신청서를 작성 및 본 공고문에 명시된 기한까지 공단에 제출
- 공단은 컨소시엄에서 제출한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미비한 사항이 있거나 제출자료 등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여부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, 일정기간을 정하여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보완, 추가 서류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음
 - * 상기 요청에도 불구하고 주관기관이 기한 내에 관련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지원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

2. 컨소시엄 선정·통지 및 협약체결

-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합산점수가 80점 이상인 컨소시엄을 우선 지원
 - 전체 예산규모에 따라 평가 상위 순으로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
 - 전체 예산규모에 비하여 우선순위가 부족할 경우 70점 이상도 지원

점 수	80점 이상	70점 이상 80점 미만	70점 미만
지원여부	우선지원	예산한도 내 지원가능	지원불가

※ 지원사업자 선정을 위한 절차 및 평가기준 등은 [별표 제1호] 참조

- 선정된 컨소시엄은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(주말, 공휴일 제외)에 [별지 제2호 서식]에 따라 협약서를 작성하여 공단과 협약 체결(3자 협약-공단·대기업·컨설팅업체)

3. 사업수행

- 선정된 컨소시엄은 기 제출된 사업계획서 일정에 따라 컨설팅 진행
 - 컨소시엄은 사업계획서 승인 이후, 기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e나라도움을 통해 사업변경신청서를 작성·제출하여 공단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, 위반 시 사업 취소 및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

※ e나라도움 온라인 사업변경신청서 작성 절차

- ① e나라도움 로그인 → ② 사업수행관리 → ③ 신청관리 → ④ 사업 변경관리 → ⑤ 사업변경신청 → ⑥ 해당 사업 선택 후 '신청서 작성'을 클릭하여 사업변경신청서 작성 및 제출

※ 상세 내용은 e나라도움 홈페이지(www.gosims.go.kr)에 게재된 매뉴얼 참조

4. 정부지원금(선급금) 지급

- 공단은 3자 협약 후 정부지원금의 70% 이내에서 컨설팅업체에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, 이 때 컨설팅업체는 국고보조금통합 관리시스템(이하 'e나라도움'이라 함)을 통해 교부신청서를 작성·제출해야 함

◆ e나라도움 교부신청서 작성 절차 (선급금 신청 시)

- ① e나라도움 로그인 → ② 사업수행관리 → ③ 신청관리 → ④ 교부관리 → ⑤ 교부신청 → ⑥ 해당 사업 선택 후 '신청서 작성'을 클릭하여 교부 신청서 작성 및 제출

※ 상세 내용은 e나라도움 홈페이지에 게재된 매뉴얼 참조

- 컨설팅업체는 정부지원금(선급금)에 대한 교부신청서 제출 시, 공단을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(선급금)보증보험증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

5. 상황보고

-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단은 필요한 경우 사업 실시 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, 컨소시엄은 공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함

6. 최종보고서 제출 및 최종평가

- 대기기업은 온실가스·에너지절감 효과가 반영된 종합보고서 및 현물 투자 증빙자료를, 컨설팅업체는 지원 중소기업별 기술지도보고서를 사업기간 종료일까지 공단으로 제출해야 함
- 공단은 제출된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 추진내용에 대한 오프라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

7. 정부지원금(잔금) 지급

- 공단은 최종평가 통지 후 컨설팅업체에 잔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, 이 때 컨설팅업체는 e나라도움을 통해 교부신청서를 작성·제출해야 함

◆ e나라도움 교부신청서 작성 절차 (잔금 신청 시)

- ① e나라도움 로그인 → ② 사업수행관리 → ③ 신청관리 → ④ 교부관리 → ⑤ 교부신청 → ⑥ 해당 사업 선택 후 '신청서 작성'을 클릭하여 교부신청서 작성 및 제출

※ 상세 내용은 e나라도움 홈페이지(www.gosims.go.kr)에 게재된 매뉴얼 참조

- 공단은 현장 확인, 사업 최종보고서 확인 등 정부지원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적정한 경우, 선급금을 제외한 정부지원금의 나머지를 지급

8. 사업비 정산 및 검증

- 컨설팅업체는 보조금(잔금)을 지급받은 후 5일 이내(주말, 공휴일 제외) e나라도움을 통해 총 사업비 집행을 완료하고 '집행마감'을 해야 함

◆ e나라도움 집행마감 절차

- ① e나라도움 로그인 → ② 집행정산 → ③ 정산관리 → ④ 집행마감 처리(하위) → ⑤ 사업연도 및 해당 사업 선택 후 '집행마감'을 클릭

※ 상세 내용은 e나라도움 홈페이지(www.gosims.go.kr)에 게재된 매뉴얼 참조

- 주관기관은 집행내역에 대한 공단 검토를 거쳐 이상이 없을 경우, 공단 검토 완료일로부터 5일 이내(주말, 공휴일 제외)에 e나라도움을 통해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

◆ e나라도움 정산보고서 생성

① e나라도움 로그인 → ② 사업수행관리 → ③ 사후관리 → ④ 정산 보고관리 → ⑤ 정산보고서생성관리 → ⑥ 사업연도 및 해당 사업 선택 후 '정산자료생성'을 클릭하여 정산자료 생성

◆ e나라도움 정산보고서 작성

① e나라도움 로그인 → ② 사업수행관리 → ③ 사후관리 → ④ 정산 보고관리 → ⑤ 정산보고대상목록 → ⑥ 사업연도 및 해당 사업 선택 후 '보고서작성'을 클릭하여 정산보고서 작성

※ 상세 내용은 e나라도움 홈페이지(www.gosims.go.kr)에 게재된 매뉴얼 참조

* 정산 관련 증빙자료는 공단에 별도 제출(추후 안내 예정)

- 공단은 컨설팅업체가 제출한 사업비 정산보고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공단이 지정한 전문 회계법인에 요청하여 검증을 실시할 수 있음
- 컨설팅업체는 공단으로부터 정산잔액 등에 대한 반납 요청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(주말, 공휴일 제외)에 보조금 집행잔액과 보조금에 발생한 이자로 분리하여 e나라도움을 통해 지정 계좌에 반납하여야 함

◆ e나라도움 보조금 반환액 반납 등록

① e나라도움 로그인 → ② 집행정산 → ③ 정산관리 → ④ 반납관리 → ⑤ 이자잔액 반납등록(하위) → ⑥ 사업연도 및 해당 사업 선택 후 반납정보 저장 및 이체요청

◆ e나라도움 보조금 반환액 반납 이체

① e나라도움 로그인 → ② 집행정산 → ③ 정산관리 → ④ 반납관리 → ⑤ 반납이체실행(하위)

※ 상세 내용은 e나라도움 홈페이지(www.gosims.go.kr)에 게재된 매뉴얼 참조

9. 보조금의 환수

- 공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, 필요 시 평가위원회를 구성·개최하여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음

가. 교부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

나. 보조금을 지급한 후에 본 공고문에 따른 '보조금 교부결정의

취소' 사유가 발생한 경우

- 다.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
- 라. 본 공고문에 따른 '사업계획 변경 등'의 절차를 위반한 경우
- 마. 그 밖에 평가위원회를 거쳐 보조금의 환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10. 사업성과 활용

- 공단은 우수 절감 및 추진 사례와 관련하여 성과발표회 등을 개최하고 필요 시 우수 컨소시엄에게 성과발표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컨소시엄은 공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함

7 사업추진 시 유의사항

-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 법령 및 지침을 따름
 - 가.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
 - 나.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 - 다.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(기획재정부 공고)
 - 라.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(산업통상자원부 공고) 등
- 대기업 부담 현물출자 금액이 공고상 기재된 금액(114만원/업체) 미달 시 차년도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
- 선정 컨소시엄의 사업최종 평가 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, 차년도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

8 사업 신청 방법

- (신청기간) 공고일 ~ 2021. 3. 19(금) 17:00까지
- (제출서류)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(사업계획서, 각종 증빙서류 등)
 - * 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 등 양식은 e나라도움 홈페이지(www.gosims.go.kr) 및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(www.energy.or.kr)에서 다운로드
 - * 중소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청 발급 확인서만 인정(<http://sminfo.smba.go.kr>)
- 신청절차
 - 1) (사업신청) 반드시 e나라도움(www.gosims.go.kr)을 통해 사업신청을 하여야 하며, 공단에 관련 서류 제출 필요
 - ※ 동 지원사업 신청자는 e나라도움 회원가입 필수
- e나라도움 사업신청서 작성

◆ e나라도움 신청서 제출은 신청마감일 17:00까지 '제출' 처리된 건에 한함

◆ e나라도움 온라인 사업신청서 작성 절차

① e나라도움 로그인 → ② 사업수행관리 → ③ 신청관리 → ④ 사업
신청관리 → ⑤ 공모현황 → ⑥ 공모명 '2021년 대·중소기업 감축 동행
지원' 선택 후 '신청서 작성'을 클릭하여 사업신청서 작성 및 제출

2) (서류제출) e나라도움에서 사업신청서 작성·제출 후, 사업계획서
등 관련 서류*(원본 1부, 사본 9부)를 우편 제출 * A4규격 책자형태

※ 서류제출은 신청마감까지 공단 도착분에 한함(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
하지 않음)

[제출처] 한국에너지공단 산업기후실(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23)

- e나라도움 사업신청 및 서류제출이 기한 내 모두 완료되어야 함

○ 문의처

- 사업 문의 : 052 - 920 - 0404 (담당 : 산업기후실 이재욱 주임)

- e나라도움 사용문의(회원가입 및 사업신청 등) : 1670 - 9595

1. 선정절차

○ 지원사업자 선정 및 지원금 확정 절차

검토·평가	검토·평가 내용	비 고
컨소시엄 선정 평가위원회	· 신청 사업의 적합성	오프라인 평가 (서면평가)
	· 사업의 종합목적성 및 수행역량 등 평가	
	· 기술지원 및 설비 투자금액 등 평가	

○ (선정방법) 주관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오프라인 평가를 통해 컨소시엄 선정

○ 사업자선정위원회 구성

- 지원사업자 선정의 객관성 및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산·학·연·관 전문가 10인 이내로 구성
- 신청 사업에 대한 평가, 선정 대상의 세부 사업비 검토·심의 및 지원사업자를 최종 확정

2. 선정기준

○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합산점수가 80점 이상인 컨소시엄을 우선 지원

- 전체 예산규모에 따라 평가 상위 순으로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
- 전체 예산규모에 비하여 우선순위가 부족할 경우 70점 이상도 지원

점 수	80점 이상	70점 이상 ~ 80점 미만	70점 미만
지원여부	우선지원	예산한도 내 지원가능	지원불가

3. 선정평가 기준

평가지표	평가기준	배 점
사업추진 의지 (10)	- 사업 추진의지, 여건 등 기반환경 조성 - 사업목적 및 필요성 적합성	10
사업수행 내용 (40)	- 사업 계획의 적정성	20
	- 컨설팅 수행 범위의 적정성	
	- 컨설팅 추진방법 및 일정의 구체성, 실효성	10
	- 지원 중소기업 기술교육 계획(평균) ¹⁾	10
사업수행 능력 (30)	- 에너지경영혁신 자문단의 전문성 및 보유 기술력	20
	- 대기업 현물 계획의 적정성	10
사업효과 (10)	- 컨설팅 수행 효과성	10
컨소시엄 규모 (10)	- 지원 중소기업 참여 규모 ²⁾	10
가점 (5)	- 대기업의 협력기업 설비 설치에 대한 투자 계획 ³⁾	5
합 계		100

1) 지원 중소기업 기술교육 계획 평가점수 산정방법

지원중소기업 기술교육 계획(평균)	2.5회이상	2회이상 ~2.5회미만	1.5회이상 ~2회미만	1회이상 ~1.5회미만	1회미만
점 수	10	9	8	7	6

2) 지원 중소기업 참여 규모 평가점수 산정방법

지원 중소기업 참여 규모	6개사 이상	5개사이상 ~ 6개사미만	4개사이상 ~ 5개사미만	3개사이상 ~ 4개사미만	~3개사 미만
점 수	10	9	8	7	6

3) 대기업의 투자 금액 평가점수 산정방법 <가점>

지원 중소기업 참여 규모	1억원 이상	7.5천만원이상 ~1억원미만	5천만원이상 ~7.5천만원미만	25천만원이상 ~5천만원미만	1백만원이상 ~25천만원미만
점 수	5	4	3	2	1

[참고1] 선정평가표

2021년 기업협력군 에너지동행 사업 계획 평가표

○ 컨소시엄 : (대기업) (컨설팅업체)
(중소기업)

평가일 : 2021. .

평가항목	평가지표	평점					
		매우우수	우수	보통	다소낮음	낮음	계
사업추진의지 (10)	- 사업 추진의지, 여건 등 기반환경 조성 - 사업목적 및 필요성 적합성	10	9	8	7	6	
사업수행내용 (40)	- 사업계획의 적정성 - 컨설팅 수행 범위의 적정성 - 컨설팅 추진방법 및 일정의 구체성, 실효성	20	18	16	14	12	
	- 지원 중소기업 별 기술교육 실시 계획	10	9	8	7	6	
	- 총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	10	9	8	7	6	
사업수행능력 (30)	- 에너지경영혁신자문단의 전문성·보유기술력	20	18	16	14	12	
	- 대기업 현물 계획의 적정성	10	9	8	7	6	
사업효과 (10)	- 컨설팅 수행 효과성	10	9	8	7	6	
컨소시엄 규모 (10)	- 지원 중소기업 참여 규모	10	9	8	7	6	
가점 (5)	- 대기업의 협력기업 설비 설치에 대한 투자 계획	5	4	3	2	1	
합 계							
기타 의견							
평가위원	소속기관명	성명:				(서명)	

4. 최종평가 기준

평가지표	평가기준	배 점
추진방법 (20)	- 컨설팅 추진 체계 및 참여 인력의 적정성 - 컨설팅 추진방법 구체성 - 추진 일정 및 전략의 적절성	20
사업내용 (40)	- 사업 목표의 명확성 - 에너지 절감량 산출과정의 정확성 - 컨설팅 결과분석 내용의 적절성	30
	- 사업비 선정 및 집행의 적절성	10
활용효과 (40)	- 컨설팅 수행 효과성	10
	- 감축아이템 발굴 건수(평균) ¹⁾	10
	- 감축 아이템 선정의 타당성 - 감축 아이템 개선효과 산출의 적정성 - 감축 아이템 투자 이행 계획 수립의 적절성	20
가점 (5)	- 대기업의 협력사 시설투자 금액 ²⁾	5
합 계		100

1) 감축아이템 발굴 건수 평가점수 산정방법

감축아이템 발굴 건수(평균)	5건이상	4건이상 ~5건미만	3건이상 ~4건미만	2건이상 ~3건미만	2건미만
점 수	10	9	8	7	6

2) 대기업의 투자 금액 평가점수 산정방법 <가점>

지원 중소기업 참여 규모	1억원 이상	7.5천만원이상 ~1억원미만	5천만원이상 ~7.5천만원미만	2.5천만원이상 ~5천만원미만	1백만원이상 ~25천만원미만
점 수	5	4	3	2	1

[참고2] 최종평가표

2021년 기업협력군 에너지동행 사업 최종 평가표

○ 컨소시엄 : (대기업) (컨설팅업체)
(중소기업)

평가일 : 2021. .

평가 항목	평 가 지 표	평 점					평가 점수
		매우 우수	우수	보통	다소 낮음	낮음	
추진방법 (20)	- 컨설팅 추진 체계 및 참여 인력의 적정성 - 컨설팅 추진방법 구체성 - 추진 일정 및 전략의 적절성	20	18	16	14	12	
사업내용 (40)	- 사업 목표의 명확성 - 에너지 절감량 산출과정의 정확성 - 컨설팅 결과분석 내용의 적절성	30	27	24	21	18	
	- 사업비 선정 및 집행의 적절성	10	9	8	7	6	
활용효과 (40)	- 컨설팅 수행 효과성	10	9	8	7	6	
	- 협력기업 감축아이템 발굴 평균 건수	10	9	8	7	6	
	- 감축 아이템 선정의 타당성 - 감축 아이템 개선효과 산출의 적정성 - 감축 아이템 투자 이행 계획 수립의 적절성	20	18	16	14	12	
가점 (5)	- 대기업의 협력사 시설투자 금액(가중치적용) · 무상투자 시 : 배점 × 1 · 용자투자 시 : 배점 × 0.5	□ 해당					
합 계							
기타 의견							
평가위원	소속기관명	성명:				(서명)	

[별표 제2호] 위반 시 사업 참여 제한 기준

1. 조치대상자

-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위반한 참여기업으로, 해당 기업, 대표자, 보조금 사용 위반행위에 실질적으로 가담한 자

2. 제재 조치 사항

- 상기 조치대상자가 동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경우, '3.조치기준'에 따라 사업 참여 제한

3. 조치기준

주요 위반사항	조치기준
○ 공단의 시정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는 경우	사업참여제한 2년
○ 참여기업이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	사업참여제한 2년
○ 공단의 사전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당초 사업계획과 상이한 사업비 집행 등이 이루어진 경우	사업참여제한 2년
○ 참여기업이 관련 법령 및 규정, 사업공고문 등에 근거한 공단의 처리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	사업참여제한 3년
○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계획서, 보조금 교부신청 서류 등을 제출하였거나, 중요한 사실을 고의적으로 누락한 경우	사업참여제한 3년
○ 보조금을 대상사업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	사업참여제한 3년
○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	사업참여제한 3년